

#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431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26. 5. 27.

제 출 자 : 송파구청장

## 1. 의결주문

서울특별시 송파구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 2. 제안이유

상위법인 「성별영향평가법」에 따라 일부 조항의 내용을 개선 및 보완하여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

## 3. 주요내용

가. 「성별영향평가법」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관련 용어 정의 통일·정비 및 현행화  
(안 제1조·제2조·제3조·제6조·제9조)

나.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관련 조문 정비(안 제5조·제5조의2·제5조의3)

다. 성별영향평가책임관 지정대상 변경(안 제11조)

↳ (변경 전) 여성정책 담당 과장 → (변경 후) 성별영향평가 소관 업무 국장  
라. 법에 규정된 특정성별영향평가 실시사항 반영(안 제12조)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(별첨)

- 1) 「성별영향평가법」 제1조(목적) 및 제2조(정의)
- 2) 「성별영향평가법」 제10조의2(지방자치단체의 특정성별영향평가)
- 3) 「성별영향평가법」 제13조의2(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
- 4) 「성별영향평가법」 제14조(성별영향평가책임관과 실무담당자의 지정 및 임무)

나. 예산조치: 별도비용 없음

다. 관련부서 사전협의: 부패영향평가(감사담당관), 기획예산과(규제사전심사)

※ 성별영향평가(여성보육과)

라. 기 타

1) 개정문안, 신·구조문 대비표,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: 별첨

2) 입법예고: 2026. 4. 29. ~ 5 19. (20일간)

##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송파구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성별영향평가법」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“성별영향평가”란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.
2. “성인지 예산”이란 예산의 편성·집행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재원이 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을 말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양성평등”을 “성평등”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별영향평가 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”를 “서울특별시 송파구 성별영향평가 위

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.

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의2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성별영향평가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한다.

③ 당연직 위원은 성별영향평가 업무 소관 과장 및 예산 업무 소관 과장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. 단,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.

1. 성평등 및 성인지 정책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

2. 송파구 양성평등위원회 위원

3.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의 사임 등으로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.

제5조의3(위원회의 운영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.

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, 간사는 성별영향평가 업무 소관 팀장으로 한다.

⑤ 위원의 해촉·제척·기피·회피 및 그 밖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송파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

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,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4호 중 “양성평등”을 각각 “성평등”으로 한다.

제9조제1항제3호 중 “양성평등”을 “성평등”으로 한다.

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여성정책 담당 과장”을 “성별영향평가 업무 소관 국장”으로 한다.

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제13조 및 제14조로 하고,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조(특정성별영향평가)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

1. 시행 중인 조례·규칙
2.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관 정책
3.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출자·출연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

② 제1항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서 대상과제를 심의·선정하며,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「성별영향평가법」 등 관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<u>성별영향평가</u>”란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(이하 “<u>구청장</u>”이라 한다)이 제정·개정을 추진하는 <u>조례·규칙을 포함한 각종 계획 및 사업 등의 정책이 양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양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.</u></p> <p>2. “<u>성인지 예산</u>”이란 예산의 편성·집행 과정에서 <u>양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재원이 양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을 말한다.</u></p> <p>3. (생략)</p> <p>제3조(구청장의 책무) ① 구청장은 각종 정책을 수립·시행함에 있어 <u>양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·③ (생략)</p>	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<u>성별영향평가법</u>」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정책에 대한 <u>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 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</p> <p>1. “<u>성별영향평가</u>”란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(이하 “<u>구청장</u>”이라 한다)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<u>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.</u></p> <p>2. “<u>성인지 예산</u>”이란 예산의 편성·집행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재원이 <u>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을 말한다.</u>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조(구청장의 책무) ① ----- ----- ----- <u>성평등</u> ----- -----</p>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
<p>제5조(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</p> <p>①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하여 <u>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별영향평가 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</u></p> <p>② (생략)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<u>성별영향평가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</u></p> <p>5. (생략)</p> <p>③ <u>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은 「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성평등기본 조례」 제20조에 따라 설치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성평등위원회가 수행한다.</u>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	<p>제5조(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</p> <p>① ----- ----- ----- <u>서울특별시 송파구 성별영향평가 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</u>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&lt;삭제&gt;</p> <p>5. (현행과 같음)</p> <p>&lt;삭제&gt;</p> <p>제5조의2(위원회의 구성) ① <u>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u></p> <p>② <u>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성별영향평가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한다.</u></p>

현행	개정안
<p data-bbox="216 1798 366 1839">&lt;신설&gt;</p>	<p data-bbox="796 241 1321 685">③ <u>당연직 위원은 성별영향평가 업무 소관 과장 및 예산 업무 소관 과장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. 단,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.</u></p> <ol data-bbox="796 712 1321 1021"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성평등 및 성인지 정책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</u></li> <li>2. <u>송과구 양성평등위원회 위원</u></li> <li>3. <u>그 밖에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</u></li> </ol> <p data-bbox="796 1182 1321 1491">④ <u>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의 사임 등으로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</u></p> <p data-bbox="796 1585 1321 1693">⑤ <u>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.</u></p> <p data-bbox="762 1787 1321 1962"><u>제5조의3(위원회의 운영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제6조(성별영향평가의 대상)</p> <p>① 구청장은 「성별영향평가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성별영향평가의 대상(이하 “평가대상”이라 한다)으로 한다. 다만, 제2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<u>양성평등</u>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평가대상으로 한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	<p>② <u>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u></p> <p>③ <u>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.</u></p> <p>④ <u>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, 간사는 성별영향평가 업무 소관 팀장으로 한다.</u></p> <p>⑤ <u>위원의 해촉·제척·기피·회피 및 그 밖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송파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</u></p> <p>제6조(성별영향평가의 대상)</p> <p>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성평등</u>----- 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
<p>1. 여성의 지위 향상 또는 <u>양성평등</u>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</p> <p>2.·3. (생략)</p> <p>4. 그 밖에 정책효과가 <u>양성평등</u>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<u>성별영향평가</u>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</p>	<p>1. ----- <u>성평등</u> ----- -----</p> <p>2.·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----- <u>성평등</u> ----- ----- ----- -----</p>
<p>제9조(성별영향평가서 및 종합결과보고서의 작성과 제출)</p> <p>① (생략)</p> <p>1.·2. (생략)</p> <p>3. 그 밖에 <u>양성평등</u>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9조(성별영향평가서 및 종합결과보고서의 작성과 제출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1.·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 <u>성평등</u>----- -----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1조(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)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<u>여성정책 담당 과장</u>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 수행하도록 한다.</p> <p>1. ~ 5. (생략)</p>	<p>제11조(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) ----- ----- ----- <u>성별영향평가 업무 소관 국장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
<p><u>&lt;신설&gt;</u></p> <p><u>제12조(수당 등) (생략)</u> <u>제13조(시행규칙) (생략)</u></p>	<p><u>제12조(특정성별영향평가)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<u>1. 시행 중인 조례·규칙</u></li> <li><u>2.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관 정책</u></li> <li><u>3.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출자·출연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</u></li> </ol> <p><u>② 제1항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서 대상과제를 심의·선정하며,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제13조(수당 등) (현행 제12조와 같음)</u> <u>제14조(시행규칙) (현행 제13조와 같음)</u></p>

**성별영향평가법**

**제1조(목적)** 이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성별영향평가”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.

**제10조의2(지방자치단체의 특정성별영향평가)**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
  1. 시행 중인 조례·규칙
  2.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
  3.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
  4.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·출연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, 매년 반영 결과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**제13조의2(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**

- ①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(이하 이 조에서 “지방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- ② 지방위원회의 기능,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**제14조(성별영향평가책임관과 실무담당자의 지정 및 임무)**

-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성별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성별영향평가업무를 총괄하는 성별영향평가책임관과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
  2. 제6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및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
  3. 제9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결과의 정책,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반영에 관한 사항
  4.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개선 계획의 수립·시행·제출, 개선 조치결과의 제출에 관한 사항
  5. 제1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
  6. 성별영향평가 업무의 종합·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소속 기관의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- ③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과 실무담당자의 지정 및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

### 제2조(성별영향평가 대상 정책의 선정)

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「성별영향평가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5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(이하 “대상 정책”이라 한다)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. 다만,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.

1.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·개정을 추진하는 법령(법률·대통령령·총리령·부령 및 조례·규칙을 말한다)
2.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(週期)로 수립하는 계획
3.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의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
4. 「지방재정법」 제41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·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.

1.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
2.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
3. 국가·지방자치단체의 조직,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·관리에 관한 경우
4.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성별영향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### 제12조(성별영향평가책임관과 실무담당자의 지정 및 업무)

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소속 실장·국장(실·국을 두지 아니하는 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과장·담당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를 말한다) 중에서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.

## 지방재정법

### 제36조의2(성인지 예산서의 작성·제출)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[이하 “성인지 예산서”(性認知 豫算書)라 한다]를 작성하여야 한다.
- ②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에는 성인지 예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.
- ③ 그 밖에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 지방재정법 시행령

### 제40조의2(성인지 예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)

- ① 법 제36조의2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[이하 “성인지 예산서”(性認知 豫算書)라 한다]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
  1. 성인지 예산의 개요 및 규모
  2. 성인지 예산의 성평등 기대효과, 성과목표 및 성별 수혜분석
  3.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
- ② 성인지 예산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성평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작성기준 및 방식 등에 따라 작성한다

(이하 생략)

서울특별시 송파구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**1. 비용발생 요인**

- 해당사항 없음

**2. 미첨부 근거(이유) 규정**

-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제1호

**3. 미첨부 사유**

-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 개정으로 인한 별도의 예산의 증·감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.

**4. 작성자**

- 작성자 : 주 무 관 행정7급 양인정
- 검토자 : 여성정책팀장 행정6급 신아람
- 결재자 : 여성보육과장 사회5급 차영미